

투 명 성

공 표 [제21.1조제1항]

□ 의무 내용

-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련된 법률·규정·절차 등을 신속하게 공표하고, 상대국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시 기회 보장
- 협정 적용 사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중앙정부의 제안된 규정(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)에 대하여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최소 4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 부여
 - ※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·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규정 및 제안된 기술규정에 대해서는 최소 60일 입법예고 기간 부여 (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6조)
-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주요의견 및 개정사항은 관보 또는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

참고: 양측 관련 제도

○ 우리측

- 우리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(likms.assembly.go.kr) 및 법제처 사이트(www.moleg.go.kr)를 통해 모든 법령(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)에 대해 입법절차 진행상황을 공표하고 있음.
- 행정절차법(2012.3.15 시행)은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규정
-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는 인터넷 등에 공표 (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2항)

○ 미측

- 미측은 입법예고, 의견 제출,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 및 설명 등을 위한 정부 공식 사이트 운영중 (www.regulations.gov)
- 의견제출에 최소 6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(행정명령 12866(1993.9.30) Sec.6(a)(1))
- 제안된 입법안을 관보(Federal Register)에 미리 게재하여, 의견제출 기한 및 절차, 법적 권한, 주요 내용 등을 고지하고,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를 최종 관보에 게시(행정절차법 (Administrative Procedures Act) Sec.553)

정보의 제공 [제21.2조]

-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할 경우, 해당되는 조치(조치안 포함)와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

행정절차 [제21.3조]

- 자국의 모든 조치(법·규정·절차·관행·요건 등)안을 다른 쪽 당사국의 사람·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할 경우 행정절차는 아래 사항을 보장
 - ① 행정절차 개시되는 경우 가능하다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이해관계인에게 절차의 성격 및 법적 근거 등 합리적으로 통지를 제공
 - ② 최종 행정처분 이전에 다른쪽 당사국의 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 제공 보장

민간 구매에 관한 정책 [제21.5조]

- 자국의 민간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, 사용을 자제토록 하는 것이 자국의 정책이 아님을 확인